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 선고 2019가단5253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**원고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**피고**1. 주식회사 C

2. D

**변론 종결**2020. 5. 19.

**판결 선고**2020. 6. 2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,927,323원 및 그 중 34,755,924원에 대하여 2019. 10. 19.부터 2020. 1. 2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C: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D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김정기

별지